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1항제4호 및 제2항제3호 중 “기타”를 각각 “그 밖에”로 한다.

별표 1 비고 제2호 중 단서를 삭제하고, 같은 표 비고 제4호 중 “점용료중”을 “금액 중”으로 하며, 같은 표 비고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표 비고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삭제하며, 같은 표 비고 제9호 및 비고 제10호를 각각 비고 제7호 및 비고 제8호로 하고, 같은 표 비고 제11호를 삭제하며, 같은 표 비고 제12호를 비고 제9호로 한다.

5. “위 표 제2호에서 원형관이 아닌 점용물의 점용단위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당해 점용물의 외접하는 직사각형과 같은 단면적을 가진 원의 지름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(다음 페이지에 계속)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7조(점용료의 감면)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.	제7조(점용료의 감면) ----------.
1. ~ 3. (생 략)	1. ~ 3. (현행과 같음)
4. 재해로 인하여 본래의 점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**기타** 시장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	4. ----------**그 밖에**----------
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의 감면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.	② ----------.
1.·2. (생 략)	1.·2. (현행과 같음)
3. 제1항제4호의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해 **기타** 특별한 사정의 정도에 따라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비율 또는 시장이 정하는 비율의 점용료 감면	3. --**그 밖에**----------
③ (생 략)	③ (현행과 같음)
〔별표1〕 점용료 산정기준(제3조 관련)	**〔별표1〕 점용료 산정기준(제3조 관련)**
표 (생 략)	표 (현행과 같음)
※ 비고	※ 비고
1. (생 략)	1. (현행과 같음)
2. 점용료를 연액으로 산정하는 경우로서 그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매1월을 12분의 1년으로 하고, 이 경우 1월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. **다만, 총 점용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에는 1일을 365분의 1년으로 한다.**	2. ----------. **<단서 삭 제>**

(다음 페이지에 계속)

3. (생 략)	3. (현행과 같음)
4. 단위당 점용료는 1원단위까지 산정하되 그 산정한 **점용료중** 100원미만은 절사한다.	4. ----------**금액 중**----------.
5. 위 표 제2호의 점용물중 작업구(맨홀)·전력구·통신구의 직경은 외접하는 직사각형과 같은 단면적을 가진 원의 직경으로 한다.	**5. 위 표 제2호에서 원형관이 아닌 점용물의 점용단위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당해 점용물의 외접하는 직사각형과 같은 단면적을 가진 원의 지름으로 한다.**
6. (생 략)	6. (현행과 같음)
7. 위 표 제3호에는 같은 호에서 규정한 점용물을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.	**7. <삭 제>**
8. 위 표 제6호의 "기타"에는 다음 점용물을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.	**8. <삭 제>**
가. 위 표 제1호에서 규정한 점용물중 "송전탑·변압기·저장고·기타"의 점용물	
나. 위 표 제4호·제5호에서 규정한 점용물	
다. 위 표 제7호에서 규정한 점용물중 가로판매대·구두수선대·버스카드판매대 이외의 점용물	
라. 위 표 제8호에서 규정한 점용물중 "일시 설치한 것" 이외의 점용물	
마. 위 표 제10호에서 규정한 점용물중 "농업 및 식물재배, 어업 및 어획물 위탁판매·주택" 이외의 점용물	
9. 지하점용물의 상단의 깊이가 지하 2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 점용료의 2분의 1을, 지하 40미터 이상인 경우에	7. ----------

(다음 페이지에 계속)

는 그 점용료의 5분의 4를 각각 감액한다.	----------.
10. 위 표중 정액으로 부과하는 점용료는 지가변동률이 10퍼센트 이상 변동된 경우에 한하여 3년마다 이를 재조정할 수 있다.	8. ----------.
11. 위 표 제7호에서 규정한 점용물중 버스카드판매대·구두수선대 및 가로판매대는 점용료 산정총액이 연간 700,000원을 초과할 때에는 700,000원으로 한다.	11. 〈삭 제〉
12. 「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18조에 따른 시장·시장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에 상인 또는 상인이나 고객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의 점용료의 경우에는 점용료 80/100을 경감하되 2016년 12월 31까지 효력을 가진다.	9. ----------.

(다음 페이지에 계속)